

농약등록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 경영이양 농지 양수 대상자 확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이 경영이양한 농지의 양수 대상자가 기존 60세 이하 전업농과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한 사람 △약정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람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사람 등은 경영이양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농지연금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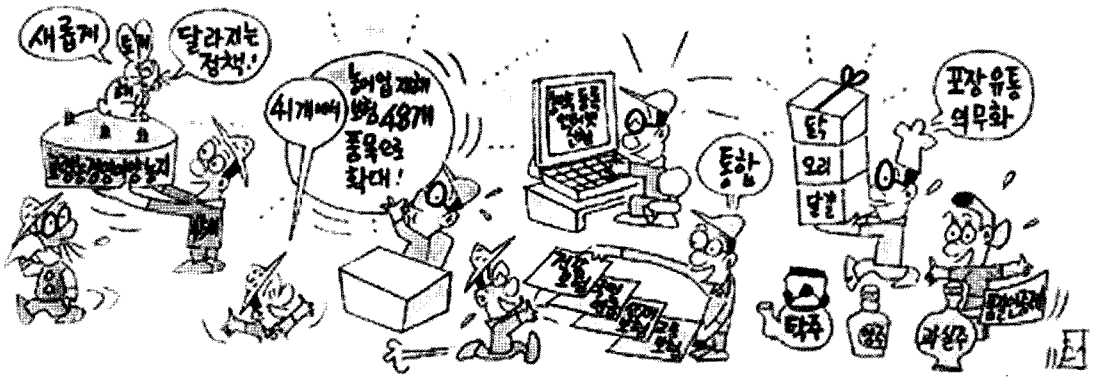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약 9,090평)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닭·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닭고기와 오리고기, 식용 달걀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5만마리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 적용되던 포장유통 의무가 올해 1월부터 닭·오리 도축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또 4월부터는 식용 달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현재 41개에서 48개 품목으로 확대(농작물 5품목, 가축 1축종, 양식 1어종 추가)된다. 또 전국 시행품목이 7개에서 12개로 확대되어 자두·참다래·콩·감자·양파 등 5개 품목도 재해보험 대상이 된다. 그동안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를 보장하는 복숭아와 포도에 대해 보험기간이 '말야기~수확기'에서 '연중'으로 연장되고 겨울철 동해와 설해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변경된다.



— 술 품질인증 실시

탁주(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품질인증 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 기준, 제조장 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되며 인증마크는 인증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하는 '가' 형과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인 경우 사용하는 '나' 형으로 구분된다.

— 농약등록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

그동안 매 분기 말마다 농촌진흥청에 종이서류로 신청해야 했던 농약등록이 앞으로는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농약등록 신청이 가능한 사이트는 농촌진흥청 온라인 민원처리 포털(<http://minwon.rda.go.kr>)이다.

—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7월부터 30ha 이상의 산지 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조사제도는 산지 전용 허가의 핵심 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 작성에 대한 사업자와 조사자와의 접촉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며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신설

7월부터는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농작물 등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

어업인의 배우자도 수산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의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사고시 보험금 지급 한도가 현행보다 100% 확대된다.

(2011. 1. 1 농민신문)